자동차 할부금융 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하나카드 주식회사(이하"하나카드" 라합니다)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(이하 "채무자"라 합니다)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-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- 1. "할부금융"이라 함은 하나카드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.
 - 2. "할부금융자금"이라 함은 하나카드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.
 - 3. "할부금"이라 함은 채무자가 하나카드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.

제3조 (약정서 필수기재사항)

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.

- 1. 매도인 채무자 및 하나카드의 성명 및 주소
- 2.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
- 3. 이자율, 연체이자율,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
- 4. 물건가격 및 할부금융자금
- 5. 월 할부금의 금액 및 지급횟수 및 시기
- 6.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

제4조 (거래조건의 주지 의무)

하나카드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. 다만,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(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)로 보낼 수 있습니다.

1. 하나카드가 정하는 이자율,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,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

무엇이든 채무자가 하나카드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

2. 할부금의 변제방법

제5조 (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)

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카드에게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하나카드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.

제6조 (소유권행사의 제한)

채무자는 이 약정서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하나카드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,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
제7조 (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)

- ① 채무자는 하나카드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,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.
- ②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하나카드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,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③ 제2항의 '지연배상금율'은 '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'등 관련 법규에 따라 '대출금리'에 '연체가산이자율'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, 연체 발생시점에 대출금리가 없는 상품은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. 1.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 이율
 - 2.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
- ④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,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"개인채무자보호법"이라 합니다)의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(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)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

상실된 경우에는, 하나카드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
제8조 (기한이익의 상실)

-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하나카드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.
-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양도,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,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.

제9조 (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)

-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(당월 할부금, 연체금 등)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.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하나카드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
제10조 (항변권)

-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카드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 - 1.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·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
 - 2.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
 - 3.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4.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-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하나카드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, 하나카드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

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.

- ③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 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, 하나카드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.
- ④ 채무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
제11조 (비용의 부담)

-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카드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
 - 1.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·확인서 등의 소요비용
 - 2.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
-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하나카드가 각 50%씩 부담하기로 합니다.
-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하나카드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,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.

제12조 (담보의 제공)

하나카드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하나카드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채무자는 하나카드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.

제13조 (유효기간)

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약정에 기명 날인한 날에 발생하며, 하나카드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될 때까지 유효합니다.

제14조 (채권의 양도)

하나카드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,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,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.

제15조 (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하나카드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.